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진행 장치 및 소프트웨어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9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동진행 장치 및 소프트웨어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3
※ [참고] 자동진행장치(변종 포함) 이용한 게임물 이용 행태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6.

다.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유통·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동진행 장치 및 소프트웨어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② (생략)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u>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 ----- -----.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8조1)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8호는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위임을 받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 제9호²⁾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현행법 제35조³⁾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특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게임제공업⁴⁾·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함)가 현행법 제2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 제36조⁵⁾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⁶⁾가 현행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즉,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4) 상기 언급된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이 게임제공업에 포함됨.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는 상기 언급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가 포함됨.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원격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만이 가능함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로 갈음하여 재영업하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는바,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신체 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유통 및 제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일명 변종 자동진행장치를 통한 사행성 조장을 근절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단속 회피 수법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로서,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⁷⁾과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신체접촉 없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라는 표현은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합법적인 기술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를 명시하여, 게임물에 포함되어 심의받은 자동사냥, 장애인용 대체 입력장치 등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입력을 보조하는 장치는 정상적인 입력 수단으로 보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참고

자동진행장치(변종 포함) 이용한 게임물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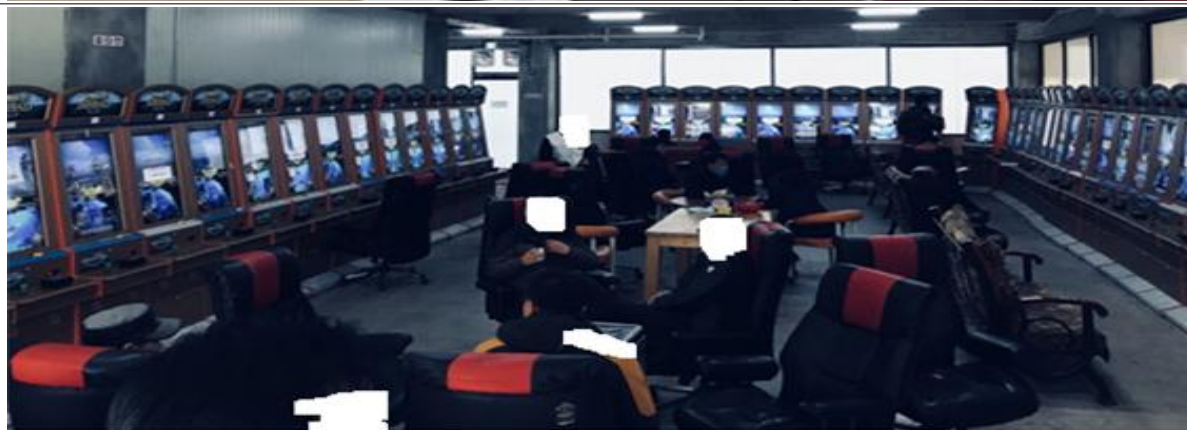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리모컨 버튼으로 특정 패턴 입력 시
자동진행장치 신호기 통해 작동



외형상 리모컨 1회 조작 시 1회 작동하는 단순
보조장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회
조작으로 다회 작동되는 '변종 자동진행장치'



- 이용자가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임 결과를 지켜보며 확률적 당첨을 기대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행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게임제공업소 방문하는 행태가 확인됨**
☞ **당첨은 5,000원의 배수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타(연속당첨)로 최대 수백만원까지 획득**
- 자동진행장치(변종 포함)를 통해 다수의 게임물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게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점수, 아이템카드, 경품 등 결과물 획득에 집중하는 이용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게임제공업소 관계자는 결과물에 대해 수수료 10%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환전**